

#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07.0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6.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06.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9.07.06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영 복 주민생활지원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마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, 개정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내용을 반영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금출납원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법제명 변경

종전의 「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라는

법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변경

2) 근거법 조항 변경 (안 제1조)

종전의 설치근거였던 법 조항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4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41조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2로 변경

3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변경 (안 제5조제2항제3항)

종전의 “사회복지위원회” 로 되어 있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 로 변경

4) 기금출납원 변경 (안 제12조제2항)

종전의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었던 “생활보장팀장” 을 “자활고용지원팀장” 으로 변경

5)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음